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2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24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'99년 8월 31일 공포,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조항과 불부합한 결산서 작성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규정한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수정함. (안 제12조제1항)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1항의 “3월 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<u>3월이내에</u> 기금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 략)	제12조(기금의 결산) ①..... <u>80일이내에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